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23
----------	------

발의연월일 : 2016. 11. 16.
발의자 : 이명수 · 경대수 · 정태옥
박찬우 · 지상욱 · 함진규
유민봉 · 김태흠 · 유기준
최연혜 · 김성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정상적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이행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업안내로 이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노인학대관련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 및 제3

9조의19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9조의19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

제39조의16의 제목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를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으로 하고, 제39조의1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학대행위자가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1364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이 조에서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숙식과 쉼터생활의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한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쉼터 보호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이 3개월의 범위에서 쉼터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쉼터의 업무를 제39조의5 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쉼터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대피해노인의 대상, 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օ) 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p> <p>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p> <p>1. ~ 8. (생 략)</p> <p><u><신 설></u></p> <p>9.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제39조의16(<u>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u>)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u>8의2. 제39조의19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u></p> <p>9.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의16(<u>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노인학대 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p>

법률 제1364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학대행위자가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
리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1364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
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
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이 조
에서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숙식과 쉼터
생활의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
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
유프로그램 제공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
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
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

복을 위한 노인학대행위자 등

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쉼터 보호노인을 위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이 3개월의 범위에서 쉼터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쉼터의 업무를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쉼터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대피해노인의 대상, 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